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이광성 의원 외 11명
- 나. 의안번호: 제1508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5. 25.
- 라. 회부일자: 2020. 5. 29.

2. 제 안 사 유

-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및 다양한 에너지 사업 환경 변화에 서울에너지 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환경·에너지 분야 사업추진 시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열거된 조문을 새로운 법령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,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에 맞춰 용어를 변경함(안 제20조제1항제6호~제9호, 안 제20조제1항제10호).
- 나. 태양광, 수소 등 에너지 간 융·복합 등의 신사업 분야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공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정 사업 항목을 신설함(안 제20조제1항제12호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

- (1)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」
- (2) 「전기사업법」
- (3)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 제·개정 등 사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20조(사업)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집단 에너지사업,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,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및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등 총 11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,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사업들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일부 사업들을 삭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¹⁾, 전기신사업²⁾, 수소사업³⁾ 등의 사업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고, “사회취약계층”이라는 용어를 “에너지빈곤층⁴⁾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1)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
5. “지능형전력망 사업”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(財貨)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
나.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
다.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

2)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(정의)

12의2. “전기신사업”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증개사업을 말한다.

3)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
2. “수소산업”이란 수소의 생산·저장·운송·충전·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·부품·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.

3. “수소전문기업”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(이하 “수소사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
가. ~ 나. (생략)

4) 「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」 제3조제7호: “에너지빈곤층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.

- 위 사업 3건은 이미 서울시 정책사업인 그린뉴딜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포함되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사업 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〈본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추진 사업 현황〉

구분	추진 사업	관련 법령
지능형전력망 사업	◦ 서울형 시민 전락수요관리사업(DR) 추진	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전기신사업	◦ 공공건물대상 소규모전력 중개사업 (서울시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추진) ◦ 전기자동차충전사업(솔라스테이션 등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사업)	전기사업법 (2018년 6월 전기신사업 조항 신설)
수소사업	◦ 상암수소충전소 운영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	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2020년 2월 제정)

- 다만, “에너지빈곤층”이라는 용어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⁵⁾을 반영하여 “에너지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⁶⁾. 또한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2호 및 3호에 따르면 “수소사업”은 “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”의 약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, 상위법에 따라 “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”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.

〈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〉

구분	현행	개정안	수정안
조문	6. 사회취약계층 의 에너지 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	10. 에너지빈곤층 의 에너지 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	10. 에너지취약계층 의 에너지 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

5)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(2020년 4월 2일,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)

6) 현재 “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”을 “에너지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하는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656)」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.

〈서울에너지공사 사회취약계층 사업 현황〉

구분	항 목 명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용	비 고													
열 요 금 감 면	기본 요금 감면	전액	· 사회복지시설 · 냉난방 함께 사용시 냉방 기본요 금 · 전용면적 60㎡이하 임대주택	기본요금 전액 면제	열공급규정 제54조 제1항												
		일부 (30%)	· 유치원, 특수학교, 외국인유치원 · 초·중·고등학교·특수학교·대학교 · 보육시설	기본요금 30% 면제	열공급규정 제54조 제2항												
	냉방 사용 요금	· 공동주택 냉방	주택용 사용요금 × 15% 감액	열공급규정 제54조 제3항													
		· 업무용 건물 냉방	업무용 사용요금 × 40% 감액														
		· 공공용 건물 냉방	공공용 사용요금 × 40% 감액														
	사용 요금 감면	오피 스텔	· 주거용 오피스텔	총 열 사용량 × (업무용 요금 단가 - 임대외 주택의 주택용 요금단가) × 주거용 비율	열공급규정 제54조 제8항												
	에너지 복지	·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1인 · 국가유공자 1~3급 상이자, · 5·18 민주화운동 장해 1~3급 · 장애등급 1~3급 ·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계층 · 다자녀가구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원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호 ~ 2호</td> <td>6,500원/월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제3호</td> <td>난방면적 99㎡초과 (난방면적×45.54원/㎡)/월</td> </tr> <tr> <td>난방면적 99㎡이하 4,500원/월</td> </tr> <tr> <td>제4호</td> <td>10,000원/월</td> </tr> <tr> <td>제5호</td> <td>(난방면적×45.54원/㎡)/월</td> </tr> <tr> <td>제6호</td> <td>5,500원/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지원금액	제1호 ~ 2호	6,500원/월	제3호	난방면적 99㎡초과 (난방면적×45.54원/㎡)/월	난방면적 99㎡이하 4,500원/월	제4호	10,000원/월	제5호	(난방면적×45.54원/㎡)/월	제6호	5,500원/월	열공급규정 제54조 제5항
	구 분	지원금액															
	제1호 ~ 2호	6,500원/월															
	제3호	난방면적 99㎡초과 (난방면적×45.54원/㎡)/월															
난방면적 99㎡이하 4,500원/월																	
제4호	10,000원/월																
제5호	(난방면적×45.54원/㎡)/월																
제6호	5,500원/월																
에너지 바우처	○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- 소득기준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- 가구원 특성기준 ·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6세 미만), 장애인, 임산부, 한 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, 중증 질환자 등을 포함하는 가구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1인 가구</th> <th>2인 가구</th> <th>3인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금 액</td> <td>95</td> <td>134</td> <td>167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추진실적: 745백만원/년('19년)</p>	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이상	금 액	95	134	167	·에너지법16조의2 ·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 제2조 제5호						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이상														
금 액	95	134	167														
에 너 지 복 지	햇빛행복 발전소 설치 지원	· 복지시설 (아동보육시설, 장애인시설 등)	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														
	동·하절기 에너지용품 지원	· 복지시설 및 시설 이용자 (아동, 노인, 장애인, 노숙인, 긴급 지원대상 등)	동·하절기 에너지용품지원 (에어서클레이터, 이불)														